

「2023년 공무원총조사」 실시 안내

< 서울시 인사과 >

I 공무원총조사 개요

- **공무원총조사는 정부(인사혁신처) 주관으로 전체 국가·지방공무원 약 110만명을 대상으로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수 통계조사로,**
※ 1969년 최초 시행, 1978년부터 5년주기로 실시, 2023년도는 제12차 조사
- **전 공무원에 대한 기본사항 및 주기적 변동사항을 조사하여, 인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,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**
※ 실시근거 : 통계법 제17조(지정통계)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의2(통계보고)

II 총조사 실시안내

- **총조사 대상 : 조사기준일 현재, 서울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**
 - **일반직, 임기제(시간선택제, 한시임기제 포함) 공무원** ※ 정무직 제외
 - **서울시(본청·사업소, 자치구·의회 포함) 소속 전 공무원**
- **조사기준일 : 2023. 8. 1. 기준**
 - 조사기준일이란, 조사참여 시 2023년 8월 1일 개인의 현황을 기준으로 모든 조사항목에 응답해야 함을 의미
 - 예1) 기준일(8.1.)에 6급인 공무원이 응답일 현재(10.15.) 5급으로 승진했다더라도, 8.1.자 '6급' 기준으로 조사항목 응답
 - 예2) 기준일(8.1.)에 자녀가 1명인 공무원이 응답일 현재(10.15.) 자녀가 2명이 되었다더라도, 8.1.자 자녀 '1명' 기준으로 조사항목 응답

□ **총조사 실시기간 : 2023. 10. 11.(수) ~ 11. 10.(금)**

- 조사 실시기간 중 직원별로 총조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시 참여

□ **총조사 참여방법 : 붙임 매뉴얼에 따라 총조사 참여**

- 행정포털 「복무관리」시스템 접속 → 메인화면 “공무원총조사” 배너 클릭,
공무원총조사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조사참여

※ 붙임 「공무원총조사 참여방법」 안내문서 참조

□ **조사문항 : 총 44개 문항 / 약 15~20분 소요**

Ⅲ 기타 안내사항

□ **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은 「2023 공무원총조사」에 필수 참여**

- 공무원총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 지정통계(승인번호 제163001호)로, 모든 공무원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1조에 따라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**될 수 있음

□ **소속기관·부서 인사담당자는 조사기간 내에 전 직원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(공람·메일안내 등), 미참여자 참여 독려**

※ 총조사 기간 중 참여율이 저조한 실·본부·국(부서)에 대해 참여율 관리예정(별도안내)

붙임 : 1. 공무원총조사 참여방법(매뉴얼) 1부.

2. (참고)공무원총조사 제외대상 1부. 끝.